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7일,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2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원택 의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불금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12월 그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증가, 소비자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증가 등으로 직불금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24년 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증가(약 11.6 배)하는 등 지원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한편, 직불금은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고, 총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 기준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임. 또한,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차액의 95%로 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농

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음(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